## 예 산 총 칙

##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15,033,213	48,450,996
일반회계	1,293,441,226	38,803,237
특별회계	321,591,987	9,647,760
공기업특별회계	232,549,847	6,976,49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58,605	46,75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3,025,241	3,390,75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7,966,001	3,538,980
기타특별회계	89,042,140	2,671,264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5, 154, 575	154,637
수질개선특별회계	11,908,794	357,264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3, 173, 725	395,212
기반시설특별회계	407,051	12,212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21,389	3,64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259,120	67,77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383,813	191,514
주택사업특별회계	102,765	3,083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6,347,841	1,390,435
지하수특별회계	3, 183,067	95,492

- 제 2 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6,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266,380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